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과목수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실시)
7급	수의(수의)	1	3과목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9급	시설(일반토목)	4	3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건축)	4	3과목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험시간 : 3과목(10:00~11:00)

2 시험 방법

가. 시험 방법

-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
-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나.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단, 수의7급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하는 자도 응시가능

다. 성 별 : 제한 없음(단, 수의7급인 경우 남자는 병역 필 하였거나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계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 제한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단, 기능사는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류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계 급	직렬(직류)	자격증(면허증) 제한	
7급	수의(수의)	수의사	
9급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9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기능사 자격증 소지시 관련분야 경력산정은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교차 비교하여 일치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함.

(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 2.12.(수) ~ 2.14.(금)	필 기	3.12.	3.21.(토)	4. 8.
	<취소 : 2.12.(수) ~ 2.19.(수)>	면 접	4. 8.	4.24.(금)	5. 1.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전(서류제출일/별도안내)에 인성 검사를 실시 (서류 미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 1522-0660)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종료)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7,000원 / 9급: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기준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인적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록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입력 가능)
-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토·공휴일은 취소 불가)
- 3) 응시표는 3월 12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4)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자격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 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직류별 적용 가산점 : 해당없음

※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직류별 가산점(5%, 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9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①호와 ②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포기란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사. 시험 문제책은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차.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교육고시담당, ☎044-300-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